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8. 12 선고 2020가단4506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피고1. B

2. C

3. D

변론 종결2020. 7. 22.

판결 선고2020. 8. 12.

주 문

1.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재산 범위에서, 피고 B은 34,285,714원, 피고 C, D은 각 22,857,142원 및 각 이에 대한 2015. 5. 25.부터 2020. 6. 10.까지 연 5%,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 돈을 지급하라.
2.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1항 상속재산 범위에서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들에게 1항 금액 단순 청구.

이 유

아래 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후 구상 청구.

F	(주) G	E	금 80,000,000원	2013. 2. 26. - 2015. 3. 27.	임차보증금 반환채무보증
---	-------	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

판사이형주